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29 선고 2020나32517(본소), 2020나32524(반소) 판결
[건물등철거 · 지상물매수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중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정희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은유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6. 29.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200388(본소),
2020가단21666(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1,947,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9.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위 나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건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31,947,8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66%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 중 건물인도 부분 및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원이 정하는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원고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9. 5. 9.을 매매체결일로 기재하였으나, 여기에는 다른 날짜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에 따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1,947,800원을 지급하라(피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다른 날짜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본소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본소의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 축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C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 축탁 결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판결 이유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주문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양 청구의 견련관계가 밀접하여 이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대현, 판사 이재민, 판사 고병용

별지

목록

1. 강원 고성군 E 대 258㎡
2. 강원 고성군 E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2.17㎡. 끝.